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06
----------	------

발의년월일 : 2021. 1.

발의의원 : 김원규 의원
강민구 의원
김규학 의원
김대현 의원
김태원 의원
안경은 의원
이만규 의원
이영애 의원

1. 제안이유

-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감면이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라 종료되어 조례로 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대구시 리스차량(대형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채권매입 부담으로 타 시도 이탈에 따른 세수 손실 및 대구시 구·군간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200만원 감면 단서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단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자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감면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도시철도법]

제21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도급계약(建設都給契約)을 체결하는 자
4.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 법 제21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제14조 관련)

매입 대상	매입 금액의 범위
1. 자동차등록(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신규등록	
가)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1) 소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
(2) 중형(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
(3) 대형(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
나)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외의 자동차	
(1) 소형(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
(2) 중형(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
(3) 대형(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
(4) 다목적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2) 이전등록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이 하 생 략)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생략)

2. 가. ~차. (생략)

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가 위 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타.(생략)

3. (생략)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4.(생략)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9.(생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②(생략)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한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④ (생략)